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2차 정무위원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무공수훈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〉

■ 김성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302호)

2025. 2.

정 무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최 기 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 : 무공수훈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	2

I. 제안경위

1. 제출자 : 김성원의원 등 10인
2. 제출일 : 2024. 12. 9.
3. 회부일 : 2024. 12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.(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☐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9조(권리의 보호)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	제19조(권리의 보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

	있는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현행법 제16조의2¹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²⁾에 따르면 2001년부터 도입된 무공영예수당은 무공훈장³⁾을 수여받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등급별로 51만원에서 53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으며, 지급대상 인원은 2024년말 기준 총 8,407명임.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무공영예수당)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 제4호·제6호·제9호, 제73조 및 제74조(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·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.

②·③ (생략)

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2(무공영예수당)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.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의4] <개정 2025. 1. 14.>

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(제27조의2 관련)

구분	월 지급액(천원)
1. 태극무공훈장	530
2. 을지무공훈장	525
3. 충무무공훈장	520
4. 화랑무공훈장	515
5. 인현무공훈장	510

3) 「상훈법」 제13조(무공훈장) 무공훈장은 전시(戰時)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(接敵)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, 이를 5등급으로 한다.

<연도별 무공영예수당 지급 현황>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가율
지급인원(명)	14,730	13,206	12,148	10,752	9,483	8,407	△10.7
월지급단가(만원)	36~380	38~40	40~42	41~43	45~47	48~50	-
총지급액(백만원)	64,218	60,746	58,873	53,238	51,507	48,413	△5.5
평균 월지급단가	363	383	404	413	453	480	5.8

자료: 국가보훈부

□ 현행 보훈제도는 생명·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,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보훈보상을 실시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수급권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의 경우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여 주는 것인데 반해,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임.

○ 현행 보훈보상은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18조에 따라 희생(사망, 상이, 독립유공활동 등)과 공헌(수훈)의 정도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⁴⁾ 보훈급여금은 보상금, 부가수당, 일신전속적 수당, 기타⁵⁾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.

- 보상금은 특별한 희생(사망, 상이, 독립유공활동 등)이 있는 독립·

4)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5) 생계지원금, 생활지원금, 사망일시금, 장제보조비 등

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것으로, 본인 사망 시 선순위유족에게 원칙적으로 승계가 가능함.⁶⁾

- 부가 수당은 생활수준, 연령, 가족 부양 등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에 부가하는 것으로, 이에는 생활조정수당, 고령수당, 부양가족수당, 전상수당, 2명 이상 사망수당 등이 있음.
- 일신전속적 수당은 특별한 희생이 없어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유족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, 참전명예수당, 무공영예수당, 4.19혁명공로수당,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등이 있음.

□ 개정안은 현행 보훈보상원칙에도 불구하고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그 수급권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.

□ 다만,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전체 보훈보상체계,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□ 첫째, 무공영예 ‘수당’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‘보상금’과 달리 무공수훈자에 따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본인

6) 신체적 기능 및 근로능력 상실, 독립유공활동 등에 따라 가족 부양이 어려웠던 것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상이가 미약한 상이7급의 경우 보상금 유족 미승계

에게 지급하는 ‘일신전속적 성격’으로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- 현행 보훈보상제도상 ‘수당’은 훈장, 참전,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 대상자의 개별적 특별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로서 수당 수급권은 본인에 한정되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있으며, 유족 보상금은 국가유공자가 입은 ‘신체적 희생’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.⁷⁾

- 둘째,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승계하게 하는 경우, 신체적 희생을 입은 7급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등의 배우자에게는 수당이 승계되지 않고 있는 바,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.

-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,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시 향후 5년간 492억 2,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는바,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,⁸⁾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

7) 상이등급이 낮은 7급의 경우 보상금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.

8) 의안번호 제2200169호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의 비용추계에 따르면, 참전유공자 배우자 승계 시 향후 5년간 8,2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.

7급 상이자도 형평성을 이유로 배우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⁹⁾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□ 한편, 부칙은 무공영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무공수훈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이전에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음.

□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승계하는 취지는 ‘국가유공자의 특별한 희생(사망, 상이, 독립유공활동)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함’으로, 특별한 희생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승계하는 것은 현 보상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, 상당한 국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110

9) 국가보훈부는 향후 5년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3,442억원, 7급 상이자 배우자 1,181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.